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0195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최나현(기소), 박휘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희묵
판 결 선 고 202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1. 22. 01:10경 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위 주거지를 나갔다가 같은 날 01:23경 물건을 놓고 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아, 널 좋아해"라고 말하며 서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을 주물러 만지고, 방 불을 끈 후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 약 5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장소,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조실 _____